

학교법인 한길학원(부천대학교) 회계부분감사 결과

1.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8. 3.(월) ~ 8. 12.(수), (토·일요일 제외 8일간)
- 감사인원 : 4명 (공인회계사 2명 포함)

2.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

연번	지적건명	지적내용	처분
	【법인회계】		
1	교육용기본재산 등 관리 부적정	<p>○ 법인에서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교육용기본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무상 임차하여 관리비 합계 50,303천원 집행</p> <p>○ 법인에서 이사회 회의 장소로 무상 임차한 사무실 (위 미활용 교육용기본재산과 같은 건물에 위치)을 실제 이사회 회의 장소로 연간 1회~2회 이용하였을 뿐인데도 매월 관리비 집행(합계 39,927천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제27조,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21조】</p>	<p>【학교법인 한길학원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- 5명 ○ 시정 - 미활용 교육용기본 재산에 대해 목적에 맞게 활용하거나 활용 불가능시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고, 무상 임차한 사무실에 대해서는 임차계약을 해지하기 바람 <p>【부천대학교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
2	수익용기본재산 (예금) 관리 부적정	<p>○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신고도 없이 정기예금을 해지 하고, 채권형 펀드에 가입(3건, 합계 5,143,992천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- 2명
3	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근이사 보수 지급	<p>○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근이사에게 월 7,000천원 씩 합계 98,000천원의 보수를 지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- 8명

연번	지적건명	지적내용	처분
		【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】	
	【교비회계】		
4	소송경비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	<p>○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 임면관련 소송 등 4건의 소송비용 합계 11,550천원을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집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제56조의2】</p>	<p>○ 경고 - 총장 등 7명</p> <p>○ 시정 -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소송비용 합계 11,550천원에 대하여 법인회계에서 8,250천원, 산학협력단회계에서 3,300천원을 교비회계로 각 전출하기 바람</p>
5	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	<p>○ 총장 관사 용도로 임차한 아파트 관리비 합계 15,444,210원을 총장이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납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】</p>	<p>○ 경고 - 8명</p> <p>○ 시정 - 부적정하게 지급된 총장 관사 관리비 합계 15,444,210원을 총장으로부터 보전받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</p>
6	전문가 활용비 집행 부적정	<p>○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전문가 활용비로 합계 41,002천원 집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“부천대 연구관리지침” 제6조】</p>	<p>○ 경고 - 1명</p> <p>○ 주의 - 6명</p>
7	산학협력단 부담비용 교비집행 부적정	<p>○ 산학협력단 산하 ‘기술지원센터’ 사무실을 임차·운영하면서 사무실 임차료, 관리비 등 합계 241,62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,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】</p>	<p>○ 경고 - 17명</p> <p>○ 시정 -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산학협력단 부담 경비 합계 241,620천원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</p>

연번	지적건명	지적내용	처분
			바람
8	계약업무 추진 부당 및 건설업 未등록업체와 공사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16건의 용역 및 물품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(합계 2,266,612천원) ○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19건의 전문공사 계약 체결(합계 632,6400천원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35조,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징계 - 4명 ○ 경고 - 8명
9	기공사 등 未 분리 발주 및 소방시설업 未 등록업체와 공 사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건축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포함하여 발주(8건, 합계 44,820,974천원) ○ '평생교육처 교육시설 조성 및 조도개선공사'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업체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(합계 709,720천원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,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,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- 11명
10	위탁교육장 시 설공사 집행 부 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위탁교육장에서 집행해야 할 5개 위탁교 육장에 대한 22건의 시설공사비 합계 485,450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, “교육부, 전문대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지침”(13.12.17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- 4명 ○ 통보 - 향후 위탁교육장 시 설공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
11	건축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기소관업무인 건축위원회 간사(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)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,0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○ 1년 간 활동 명목으로 건축위원회 수당을 선 지급하였으나, 보직변경으로 당연 해촉되었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- 총장 등 4명 ○ 시정(회수) - 부적정하게 지급 한 건축위원회 수당 합계 8,000천원 및 未

연번	지적건명	지적내용	처분
		<p>데도 未정산(합계 7,998천원)</p> <p>【부천대 건축위원회 규정, 부천대 위원회 규정, 부천대 직제시행세칙 제11조】</p>	<p>정산한 건축위원회 수당 합계 7,998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</p>
12	격려금 및 특강료 지급 부적정	<p>○ 졸업작품전에 지도교수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총장 등 6명에게 격려금 지급(합계 10,100천원)</p> <p>○ 특강을 실시하지 않은 부총장 등 9명에게 특강료 지급(합계 2,100천원)</p> <p>【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】</p>	<p>○ 경고 - 10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부당하게 지급한 졸업작품전 격려금 합계 10,100천원 및 특강비 합계 2,1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</p>
13	입시수당 및 보직수당 지급 부적정	<p>○ 입시업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총장 등 4명에게 입시수당 지급(합계 6,900천원)</p> <p>○ 직제 규정상 보직이 없는 직원에게 보직수당 지급(합계13,900천원)</p> <p>【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, 부천대학교 교직원 연봉제 급여 규정 제27조】</p>	<p>○ 경고 - 6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부당하게 지급한 입시수당 합계 6,900천원 및 보직수당 합계 13,9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.</p>
14	현장 애로기술 컨설팅비 집행 부적정	<p>○ 지급 기준시간 미만으로 컨설팅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교원에게 컨설팅비 과다·부당 집행(합계 3,450천원)</p> <p>【“부천대 기업 맞춤형 기술 컨설팅 사업시행 지침”(2013.11.)】</p>	<p>○ 경고 - 1명</p> <p>○ 주의 - 9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과다·부당하게 지급한 컨설팅비 합계 3,45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</p>

연 번	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15	성과수당 지급 부적정	<p>○ 특성화사업 및 LINC사업 선정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은 교직원에게 수당 지급(합계 45,000천원)</p> <p>【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, 부천대학교 보수규정 제22조】</p>	<p>○ 경고 - 4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부당하게 지급한 기타수당 45,0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기 바람</p>